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74,951,127	17,248,534
일반회계	554,341,118	16,630,234
특별회계	20,610,009	618,300
기타특별회계	20,610,009	618,300
상수도	13,834,358	415,031
의료급여기금	1,984,834	59,545
기초생활보장기금	2,181,074	65,432
주민소득지원기금	1,183,631	35,509
묘포장	24,352	731
주택사업	274,946	8,248
기반조성사업	8,955	269
회원관광단지조성사업지원	335,657	10,070
회원산업단지조성지원	575,945	17,278
공유임야관리	206,257	6,18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54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7,248,534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